

지배구조내부규범

제1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범은 『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“금융회사 지배구조법”이라 한다)』에 따라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

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원”이란 이사, 집행임원(『상법』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)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.
2. “이사”란 사내이사,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(이하 “비상임이사”라 한다)를 말한다.
3. “사외이사”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업무집행책임자”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·부회장·사장·부사장·전무·상무·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주요업무집행책임자”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8조에 따라 전략기획, 재무관리, 리스크관리 및 이에 준하는 주요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.

제2장 이사회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1 절 이사회와 운영 현황

제 3 조(이사회와 운영)

- ① 회사는 정관 제 2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 인 이상 15 인 이하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회사는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두어야 하며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로 한다. 또한, 회사는 필요시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- ②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이사회 의장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 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고,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
 - 2.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
 - 3.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
-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 의장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고자 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합의로써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.

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

제 5 조(이사의 자격요건)

- ① 이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 다만,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등 관계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이사는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.

제 6 조(사외이사의 자격요건)

- ① 사외이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6 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
-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 1.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, 경제, 경영,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
 2.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
 3.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
 4.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
 5. 기타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준하는 사항

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

제 7 조(이사회에의 권한과 책임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, 이사회에의 심의·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4.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
 5.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6.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 7. 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
 8.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 제30조에서 정한 사항
- ② 회사는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 2. 관계법령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
 3. 기타 대표이사가 경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③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 및 회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 8 조(이사의 권한과 책임)

- ① 이사 및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임원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규정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,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.
- ③ 사외이사는 이사회규정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(이하 “이사회 등”이라 한다)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,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4 절 이사의 선임·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

제 9 조(이사의 선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)

- ① 이사는 정관 제25조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회사는 사외이사, 대표이사, 대표집행임원,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이사의 임기)

- ①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

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하며, 해당 이사가 이사임을 전제로 선임된 이사회 의장, 대표이사 등의 임기도 이와 같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6조에 따라 1년으로 하며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. 다만,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1 조(이사의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)

- ① 이사의 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임기만료
2. 사임
3. 감독당국의 제재 및 기타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
4. 관계법령, 정관 및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
5. 천재지변, 불의의 사고, 사망, 질병 등의 유고상황 등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
6. 기타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
- ② 이사의 퇴임 등으로 인하여 이사 직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단 시일 내에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후임이사를 선임한다. 다만, 결원이 생긴 경우 이 규범 제3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5 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

제 12 조(이사회회의 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된다.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 7 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관 제 31 조에 따른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일자, 시간, 장소, 소집목적 및 안건을 기재한 통지를 이사에게 일반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개최일 3 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

이사회 소집 및 이사회에서 취급할 의안에 관한 통지는 이사가 이사회 소집 이전에 통지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13 조(의결권 행사 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 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결의로 하여야 하며, 보통결의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 특별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러한 경우,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6 절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

제 14 조(이사회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)

- ① 회사는 이사회 운영 실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연 1 회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1 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

제 15 조(이사회내 위원회)

-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 1. 감사위원회
 2. 임원후보추천위원회
 3. 리스크관리위원회

4. 보수위원회

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각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위원회의 역할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 제15조에 따라 각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16 조(감사위원회)

- ①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1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. 이 때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 중 1인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,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 등에서 정한 권한을 가진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17 조(임원후보추천위원회)

-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원(사외이사, 대표이사, 대표집행임원, 감사위원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후보를 추천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.

- ⑤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있을 경우,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시 해당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⑦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⑧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18 조(리스크관리위원회)

-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 6 조에 따라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 4 조 및 제 11 조 등에서 정한 권한을 가지며,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
 - 2.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
 - 3.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
 - 4.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
 - 5. 기타 관계법령 및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사항
- 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 9 조의 2 및 제 9 조의 3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19 조(보수위원회)

- ①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 제 6 조에 따라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보수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보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④ 보수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보수위원회규정 제 11 조 등에서 정한 권한을 가지며,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22 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
 - 2.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
 - 3. 기타 관계법령 및 보수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사항
- ⑤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 제 8 조 및 제 9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2 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

제 20 조(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)

- ① 회사는 위원회의 운영 실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연 1 회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각 위원회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

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

제 21 조 (임원의 자격요건)

- ① 임원은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.
- ② 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5 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 다만,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5 조 등 관계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25 조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또한,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26 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며,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

- ④ 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28 조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리스크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또한,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28 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며, 리스크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

제 2 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

제 22 조 (임원의 권한과 책임)

- ① 대표이사는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가 수립한 정책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관리 및 수행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권한 및 책임은 이 규범 제8조에 따른다.
-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, 대표이사가 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소관 업무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.
-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8조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
 - 2. 재무,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
 - 3.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업무
- 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제15조에 따른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.
- ⑥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른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.

제 3 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

제 23 조 (임원의 선임 및 퇴임)

- ① 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정관 제32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, 대표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. 또한,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회사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정관 제25조 및 이 규범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하고, 이사의 연임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 규범 제10조에 따른다.
- ③ 회사는 이사가 아닌 임원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, 준법감시인,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아닌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의 추천을 통해 제21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선임한다. 임원의 임기는 별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원의 퇴임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르며, 이사가 아닌 임원의 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임기만료
 - 2. 사임
 - 3. 감독당국의 제재 및 기타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
 - 4. 관계법령, 정관 및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회사와의 위임계약 종료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
 - 5. 천재지변, 불의의 사고, 사망, 질병 등의 유고상황 등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
 - 6. 인사 기타 내부규정에 따른 면직
 - 7. 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. 다만, 주요업무집행책임자, 준법감시인,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 - 8. 기타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⑤ 임원의 퇴임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르며, 임원의 유고 시의 업무대행자 및 후임자는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선임한다.
- ⑥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⑦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⑧ 임원의 선임 또는 퇴임 시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절 임원 및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

제 24 조 (임원 및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)

- ① 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제도는 교육훈련규정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회사는 임원후보자에 대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해당 교육평가의 결과를 임원의 선임 시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

제 25 조 (임원에 대한 성과평가)

- ①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과평가의 대상, 절차 및 기준, 성과급 등 보수의 체계 등은 임원의 직급과 담당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.
- ③ 회사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임원 보수의 산정, 승진 및 배치, 교육 등에 활용하며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- ④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규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활동내역을 기초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임원에 대한 보수)

-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, 제수당, 성과급 등으로 구성되며, 임원 보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2조,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규정 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

제 1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및 경영승계 지원

제 27 조 (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)

회사의 대표이사(이하 “최고경영자”라 한다)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직무충실성, 전문성, 준법, 내/외부환경주시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.

제 28 조 (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)

-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는 인사업무 담당부서로 한다.
- ②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1.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·검증 업무지원
 2. 기타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또는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

제 2 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

제 29 조 (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)

-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는 최고경영자에 대하여 이 규범 제 23 조에서 정한 임원의 퇴임사유가 발생하거나, 기타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개시된다.
- ②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 이사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최고경영자 업무대행자를 선임한다.
- ③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(이하 '비상상황'이라 한다), 이사회는 업무대행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,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.
- ④ 업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한하며,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⑤ 제 3 항의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규범 제 30 조에 준해서 절차를 진행하되,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.

제 30 조 (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)

-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29 조에 정한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최고경영자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최종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완료한다.

제 31 조 (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)

이사회는 연 1 회 이 규범 제 27 조 내지 제 30 조에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제 3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

제 32 조 (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)

- ① 최고경영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.
- ②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의 검증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한다.
-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,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 33 조 (책임경영체제)

-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임기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- ② 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책임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③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④ 최고경영자의 선임, 해임 및 퇴임사유에 대해서는 제 23 조를 준용한다.

제6장 공시 등

제 34 조 (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내역의 공시)

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린다.

1.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
2.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
3.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
4.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
5.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
6.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

제 35 조 (공시)

- ① 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14 조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 전부터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이 규범을 제정·변경한 경우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정 및 변경일부 7 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.

제 36 조 (보칙)

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, 이사회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 (2016.8.1.)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범은 2016년 8월 1일부터 제정·시행한다.

제 2 조 (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승계 관련 규정에 대한 경과규정)

제 7 조, 제 17 조 및 제 19 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제 14 조 내지 제 20 조에 따른 최고경영자승계 관련 규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설치·운영 및 시행하며,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·운영되기 전까지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.

부 칙 (2018.12.13.)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범은 2018 년 12 월 13 일부터 전면 개정·시행한다.